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4. 8. 7.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4조의 2에 따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된다.

③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지명하며 사무를 담당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학점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유사과목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선행학습(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